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-8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 업무 수행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
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추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 추가(안 제5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-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5. 7. 10.~7. 30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를 “구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에”를 “사람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“마포구에”를 “구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마포순환열차버스 등과 관련한 구 관광사업 홍보를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 및 단체(기관) 관계자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1.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이용 활성화 및 관광지 홍보에 참여하는 관광숙박업소 또는 여행업체를 이용한 사람

2.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과 제휴한 상점을 이용한 사람

3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

참가한 사람

4. 그 밖에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④ 제3항의 감면율 및 감면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때,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 하나만 적용한다.

제6조제1호가목 중 “**자**”를 “**사람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**자:**”를 “**사람: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(이하 “마포순환열차버스”라 한다)“란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노선을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. 2. ~ 6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(이하 “구”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2. ~ 6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이용료 징수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.	제4조(이용료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 <u>구</u> ----- -----.
제5조(이용료 면제 및 감면) ① 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 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이용료 면제 및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 에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마포순환열차버스 등과 관련한 구 관광사업 홍보를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 및 단체(기관) 관계자</u>

4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6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

<신 설>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② -----

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
구에 -----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1.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이용 활성화 및 관광지 홍보에 참여하는 관광숙박업소 또는 여행업체를 이용한 사람

2.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과 제휴한 상점을 이용한 사람

3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한 사람

4. 그 밖에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(이용료의 환불) 구청장은
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
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
수 있다.

1. 전액 환불

가. 운행 1일 전까지 예약 취
소가 확인된 자

나.·다. (생 략)

2. 일부 환불

가. 운행 당일 예약을 취소한
자: 이용료의 50%

④ 제3항의 감면율 및 감면방법
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내용
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이
용료를 감면할 때, 둘 이상의 감
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
그 중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
하나만 적용한다.

제6조(이용료의 환불) -----

-----.

1. -----

가. -----
----- 사람

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-----
사람: -----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정지혜
연 락 처	02-3153-8672